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안 제17조, 제17조의2 등),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48조 등)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재활용시장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의 저감 및 플라스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회용품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32조, 별표1 등)

3.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보증금 부과대상(안 제17조)

“1회용 종이·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차,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 등)를 판매하는 사업자 중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규정 마련”

나. 신용카드를 통한 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안 제28조의3)

“폐기물부담금 등 납부 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금융결제원 등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 수수료 설정함”

다. 플라스틱 제조업 재생원료 의무사용(시행령 안 제32조, 제33조 개정)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함”

라. 규제대상 1회용품 품목 추가(안 별표1)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및 우산 비닐 사용규제를 위해 해당 품목을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가목 중 “빈용기보증금(이하 “빈용기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제품의 용기”를 “용기등”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주류(酒類)

- 가.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 나.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
- 다. 「주세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 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종이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컵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가맹지역 본부를 포함한다) 및 가맹점사업자(커피·음료(커피외)·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에 한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신고한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3. 자발적으로 자원순환보증금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음료류를 말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절차)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1부
2. 설립발기인 인적사항(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3. 정관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6.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 및 취임 승낙서

7.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8.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주소, 직업 및 근무처 등을 적은 사원명부

② 환경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③ 환경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설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 각 목의 조명군

가.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

나. 발광다이오드조명제품

제2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용기의 경우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 출고량

제24조 본문 중 “자”를 “자(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1회용 컵을 사용하는 판매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① 법 제19조의2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

②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재사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재사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플라스틱 제조업

제33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플라스틱 제조업 ; 플라스틱 중 페트를 연간 1만 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자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

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8조제3항에 제4호의4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8조의2”를 “법 제15조의6”으로,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비축 시설의 설치·운영

5의2. 법 제34조의10제2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매입·판매에 관한 업무(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으로 한정한다)를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한다.

별표 1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12. 1회용 우산 비닐

별표 6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8조제7호 에 따른 제품	가. 형광등	개당 143원
	나. 발광다이오드조명제품	
	1) 전구형	kg당 1,100원
	2) 직관형	kg당 900원
	3) 평판형	kg당 600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46조의4,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제3항4의4호 및 5의2호, 제4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하며, 제16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 별표1, 별표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제품·포장재를 말한다.</p> <p>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장재. 다만, 다음 각 목의 포장재는 제외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u>빈용기보증금(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u>이 포함된 <u>제품의 용기</u></p> <p style="padding-left: 20px;">나.·다. (생략)</p> <p>2. (생략)</p> <p>제17조(<u>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u>)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u>”이란 <u>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제품</u>을 말한다.</p> <p>1. <u>다음 각 목의 주류(酒類)</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주세법」 제4조제2호에 <u>따른 발효주류</u></p>	<p>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 ----- ----- ----- ----- ----.</p> <p>1. ----- -----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u>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u>----- - <u>용기등</u></p> <p style="padding-left: 20px;">나.·다.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제17조(<u>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u>)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u>”란 <u>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u>을 말한다.</p> <p>1. <u>다음 각 목의 주류(酒類)</u></p>

나. 「주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
호에 따른 먹는물

가. 「주세법」 제5조제1항제
2호에 따른 발효주류

나. 「주세법」 제5조제1항제
3호에 따른 증류주류

다. 「주세법」 제5조제1항제
4호에 따른 기타 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
호에 따른 먹는물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종이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1회
용 컵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
(가맹지역본부를 포함한다)
및 가맹점사업자(커피·음료
(커피외)·제과제빵·패스트
푸드 업종에 한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신

<신 설>

고한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3. 자발적으로 자원순환보증금
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음료류를 말한다.

제17조의2(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
터의 설립절차) ① 법 제15조의
6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
부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1부

2. 설립발기인 인적사항(설립발
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
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3. 정관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6.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
및 취임 승낙서

7.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
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8.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주소,
직업 및 근무처 등을 적은 사
원명부

② 환경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
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
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③ 환경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

용의무량)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 출고량

②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법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빈용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해당 연도에 그 제품에 사용한 용기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을 재활용의무량으로 한다.

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

용의무량)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 출고량

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의 제출) -----
----- 자(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1회용 컵을 사용하는 판매자를 제외한다)-----

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포장재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
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
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
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3(신용카드등에 의한 부
과금등의 납부) ① 법 제19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
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
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
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

부장관이 부과금등 납부대행 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

②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

-----.

1. ~ 3. (현행과 같음)
4. 플라스틱 제조업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

-----.

1. -----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능력 및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 다. (생략)

<신설>

2. ~ 4. (생략)

<신설>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 20. (생략)

<신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플라스틱 제조업 ; 플라스틱 중 페트를 연간 1만 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자

2. ~ 4. (현행과 같음)

제46조의4(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5조의2 제4항제1호에 따른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20. (현행과 같음)

4의4.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

<신 설>

④ (생 략)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의 사용등록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 센터에 위탁한다.

<신 설>

른 비축 시설의 설치·운영
5의2. 법 제34조의10제2항에 따
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
치·운영

④ (현행과 같음)

⑤ -----

----- 법 제15조의6-----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매입·판매에 관한 업무(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으로 한정한다)를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연 락 처	(044) 201 - 7386